

죽음의 선고



이 준 상

본 란에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보건·의료문제를 법률적으로 해석해본다.

이번 호에서는 “뇌사인정”에 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인간개체의 죽음으로 인한 법적 및 사회적 종말처리는 의사의 죽음의 선고로 시작된다. 이 선고는 다른 어떤 직종도 할 수 없으며 이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사전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죽음을 무엇을 기준으로 선고하여야 할 것인가? 심·폐기능설에 따르면 심장과 폐운동 및 인체가 지니는 각종 반사운동의 영구적인 정지를 죽음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 임상에서 어떤 개체의 죽음을 선고하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릴 수 없다. 따라서 심·폐운동이 정지된 후 30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공적인 소생술에 의하여도 그 운동의 정지가 불가역적이라면 죽음을 선고하게 된다.

뇌사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뇌간을 포함하는 전체 뇌의 불가역적 기능정지」라고 정의되며, 국제적으로도 널리 인정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뇌의 주기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의식·감각 등의 뇌고유기능과 신체 각부분을 통합하는 기능이 불가역적으로 상실된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뇌를 구성하는 개개세포의 대사·기타 생활기능이 전적으로 소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보건사회부나 대한의학협회의 뇌사입법 방침과 추진계획은 심각한 일을 너무나 안

식물인간과
뇌사인간이 구별된다
하더라도
뇌사문제에는
많은 의구심이
따른다



이하게, 또 너무나 성급하게 판단한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뇌사를 인정하려는 사람은 국민들이 식물상태와 뇌사상태를 혼돈하기 때문에 뇌사거부반응이 있다고 한다. 설령 식물인간과 뇌사인간이 구별된다고 하더라도 뇌사문제에는 많은 의구심이 따른다.

그중 으뜸은 역시 뇌사판정의 잘못이다. 오판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하지만 외국례에서 보면 그 나라의 뇌사판정 기준에 하나도 어긋남이 없는 뇌사판정이었는데도 시체가 살아 있는 것으로 밝혀진 사건이 있다.

이런 경우 예정대로 그 환자의 장기를 떼어 냈다면 틀림없는 살인이 되었을 것이다. 또 뇌사상태가 되면 길어도 14일내에는 온몸이 죽는다고 하지만 일본에서의 어떤 경우 뇌사체를 54일간 살려둔 공인기록을 갖고 있다. 이를 해부하면 생체해부나 다름이 없다.

생사람의 일부인 장기가 돈으로 거래되어 그 콩팥값이 몇천만원을 호가하며, 큰 병원 근처에 이를 중개하는 조직이 있다는 말은 흔하다. 뇌사를 인정하는 국가에서도

이식용 장기가 모자라고 이식수술비용이 비싸서, 가난한 사람은 장기이식을 좀처럼 받을 수가 없는 현실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장기를 떼어내, 돈 있는 사람을 살리는 꼴이 되고, 제3세계를 수출국으로 하는 국제간의 장기무역이 성립되는 현실이 우리를 당혹케 한다.

뇌사를 인정하려는 사람은 각막이나 신장(콩팥)과 같이 2개의 장기중 하나를 제공하는 경우를 예로 든다. 이는 죽음과 삶을 구별 못하는 처사이다. 뇌사를 인정함은 죽음인데 어떻게 삶과 죽음이란 심각한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하지 않고, 제3자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외국에서는 뇌사판정 시에 전문적 경험이 있는 2명 이상의 의사가 담당하여야 하지만 장기이식에 종사하는 의사는 판정자로서의 참가를 배제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장기이식에 종사하는 의사는 자기가 행할 이식수술에 집착하



**의학적으로
뇌사설을 인정하자는
주장은, 장기이식의
필요에서 나왔다고
보는데, 이것은
의학적으로만 결정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본다**

다보면 뇌사판단을 그르칠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의학적으로 뇌사설을 인정하자는 주장은 장기이식의 필요에서 나왔다고 보는데 이 문제는 의학적으로만 결정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본다. 사람의 생사에 관한 문제는 법학, 윤리학,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의학에서 장기이식의 발달로 인하여 어차피 죽어야 할 사람의 장기를 척출하여 환자에게 이식함으로써 한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나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식자와 피이식자 양자의 생명을 다 잃게되기 때문이다. 즉 어차피 둘다 죽어야 할 사람이라면 그중 한사람을 희생시켜 다른 한사람을 살리는 것이 공리주의적 관점에 맞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측면으로부터 바라볼 때 이른바 뇌사자의 생명권에 관한 법적, 윤리적, 신학적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근거로부터 뇌사설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

첫째, 사람의 생과 사의 개념은 법률적으로 확정지을 수 있어야 하는데 뇌사는 그렇지 못하다. 즉 심폐기능이 아직 작동하는 한 그것을 죽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은 상식과 사리에 반한다 할 것이다.

둘째, 뇌사상태에 빠져 있는 자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처분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승락을 받을 수 없다. 법률은 가족이나 친족의 승락은 물론 본인 자신의 승락이나 촉탁도 생명권에 관한 한



일반적인
법의식으로는
타인의 생명가치에
대한 처분과
침해의 인상을
주는 결과가 될 때
규범은 생명보호의
편에 서지 않을 수
없다.

인정하지 않는다.

셋째, 생명가치의 대체 불가능성이다. 어느 누구를 위하여 어느 누구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을 정당화 시킬 수 있는 논리적, 윤리적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넷째, 생존가능성이 있는 자의 생존 목적을 위하여 생존 가능성이 없는 자의 생명을 단순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인간의 평등한 독립적 인격의 주체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어차피 죽을 수 밖에 없는 생명이라고 하여 타인의 존속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따라서 전문적인 의료인의 판단이나 과학적 지식으로는 사망으로 판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도, 일반인의 법의식으로서 타인의 생명가치에 대한 처분과 침해의 인상을 주는 결과가 될 때 규범은 생명보호의 편에 서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법은 인간생명의 기본가치가 항상 존중되도록 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뇌사설의 일반적인 도입은 현재의 법상태로 불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예외적인 판단의 가능성이 전적으로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뇌사자 스스로 평소와 장기기증의 의사 표시를 했고, 가족들은 인공적인 심·폐기능만의 연장을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하여 장기기식 수술에 동의했고, 이 뇌사자의 장기로 이식수술을 급히 받지 않으면 죽어갈 수 밖에 없는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책임 아래 뇌사자의 장기척출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생명의 존중은 법과 윤리에 앞서 있는 객관적 요구이지만 그 객관적인 상황에서 뇌사자의 장기척출과 장기기식에 의해 총족되었다고 보여질 수 있는 한 생명존중의 규범요구와도 충돌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에도 뇌사자의 장기가 돈으로 거래된다면 생명존중의 규범요구와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본다. 74

(필자는 고려대 醫事法學연구소장)